광주지방국세청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2025.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안내

1.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2025.12월 결산법인은 **9.1.까지** 법인세 **중간예납세액**을 **신고·납부**하여야 하며, 8.1.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.

3. 국세청에서는 **홈택스 · 손택스**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**「중간예납세액조회 서비스」**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 시 분납세액만 입력하여 신고서 제출을 마무리할 수 있는 **「미리채움 서비스」**를 **제공**하고 있으니, 귀 협회 회원들이 **많이 이용**할 수 있도록 **안내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또한 국세청에서는 항공기 사고, 폭우로 인해 **특별재난지역**으로 선포된 지역의 **중소기업**과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**석유화학·철강·건설 중소기업**[1] 및 **관세피해 수출기**업[2]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**2개월 직권 연장**[3]합니다.
   1) '23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
   2) 수출 비중이 50% 이상 & '23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·중견 기업
   3) 대상법인은 홈택스 신고 후 납부서 출력시 연장된 납부기한으로 출력

5. 아울러, 집중호우 등 **재해**로 **사업용 자산의 20% 이상 상실**한 경우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에서 **재해손실세액공제**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붙임 자료를 활용하여 **회원사**에게 **안내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집중호우 피해 기업,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. 끝.

광주지방국세청장

수신자 광양상공회의소, 광주상공회의소, 군산상공회의소, 김제상공회의소, 목포상공회의소, 순천상공회의소, 여수상공회의소, 익산상공회의소, 전북서남상공회의소, 전주상공회의소

2025. 8. 7.

국세조사관 **강희정** 팀장 **임철진** 과장 **채규일**

협조자

시행 법인세과-444 접수

우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합동청사 / http://www.nts.go.kr

전화번호 062 236 7464 팩스번호 050 31141220 / chery0325@nts.go.kr / 대국민 공개

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

□ 국세청은 이번 **집중호우**로 **특별재난지역**으로 선포된 지역 **납세자**에 대하여 **법인세 중간예납**세액의 납부기한을 **2개월 직권**으로 **연장**하고, 그 외 폭우 **피해기업**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**최대한**의 **세정지원**을 하고있습니다.

○ 또한,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이 침수 또는 파손되어 영업이 중단되는 등 **피해**를 입은 법인의 경우 **재해손실**에 대한 **세액공제**를 **적용**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**(적용 대상)** 천재지변이나 **재해**로 인하여 **사업용 자산**의 **20% 이상**을 **상실**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**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**를 **공제**합니다(법인세법 §58①).

▸ 재해상실비율 = $\frac{\text{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}}{\text{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(토지는 제외)}}$

○ 이 경우 **사업용 자산**은 **재해발생일 현재** 해당 법인의 **장부가액**에 의하여 계산하며,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.

○ 다만, 자산가액에는 **토지가액**은 **포함되지 아니하며**, **타인 소유**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**변상책임**이 **있는 것**은 **포함**됩니다.

○ 또한,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**보험금**을 **수령**하는 때에도 **상실된 자산의 가액**은 보험금을 **차감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.**

□ **(공제 세액)** 공제 세액은 ㉠재해발생일 현재 **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**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**미납된 법인세** 및 ㉡**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**에 **재해상실비율**을 **곱하여 계산**한 금액으로 하며, 재해로 인해 **상실된 자산의 가액**을 **한도**로 공제합니다.

구 분	재해손실세액공제 금액 = Min(❶, ❷)
❶ 세액공제액 = ㉠ + ㉡	㉠ [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(가산세* 포함)] × 재해상실비율
	㉡ [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+ 가산세* - 법인세법 외의 법률에 의한 공제·감면세액] × 재해상실비율
❷ 공제한도액	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

* 장부의 기록·보관 불성실, 무신고, 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, (원천징수 등) 납부지연 가산세만 해당

□ **(공제 신청)**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**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**에 **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**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**우편** 또는 **홈택스**로 **제출**하면 됩니다.

※ **(온라인 신청방법)** ① 홈택스 접속 → ② 증명·등록·신청 → ③ 세금관련 신청·신고 공통분야 → ④ 일반신청/결과조회 → ⑤ 일반세무서류 신청 → ⑥ '재해손실' 조회 후 '인터넷신청' 선택

○ 다만, 재해발생일 현재 **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**는 그 **신고기한까지 제출**하면 되고, 재해발생일부터 **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**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**3개월 이내**에 **제출**하면 됩니다.

<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제출기한>

구 분	제출 기한
▸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	▸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ex) '2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'26.3.31.까지
▸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	▸그 신고기한 (다만,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)

참고 1 | **재해손실 세액공제 관련 법령**

< 법인세법 제58조【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】>

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(이하 "재해"라 한다.)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(이하 이 조에서 "자산총액"이라 한다.)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(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.)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
2.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
< 소득세법 제58조【재해손실세액공제】>

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(이하 "재해"라 한다.)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(이하 이 항에서 "자산총액"이라 한다.)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.)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(이하 이 조에서 "자산상실비율"이라 한다.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(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.)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
2.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

참고 2 재해손실 세액공제 계산 사례

□ 농업회사법인 ☆☆은 축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제25기(2025.1.1.~2025.12.31.) 사업연도 중에 산불로 인하여 공장이 불에 타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. 화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<화재관련 자료>

1. 화재발생일 : 2025.3.22.(특별재난지역 선포일)

2. 농업회사법인 ☆☆의 사업용 자산가액 변동명세는 다음과 같다.

구 분	화재발생 직전 장부가액(①)	화재로 인해 상실된 가액(②)	화재발생 후 장부가액(③=①-②)
건 물	20억원	10억원	10억원
토 지	30억원	-	30억원
기계장치	10억원	6억원	4억원
기타자산	5억원	5억원	-
합 계	**65억원**	**21억원**	**44억원**

3. 화재발생일 현재 농업회사법인 ☆☆의 제24기 사업연도는 종료되었으나 아직 신고·납부하지 못한 법인세는 2억원이다.

4. 농업회사법인 ☆☆은 제23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3억원(가산세 5백만원 포함)을 고지받았으나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하지 못한 상태이다.

5. 농업회사법인 ☆☆의 제25기 법인세 산출세액은 1억원이며, 이는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이 손금으로 반영된 결과이다.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제25기에 농업회사법인 ☆☆에 적용될 공제감면세액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5천만원뿐이며 가산세는 증명서류수취 불성실가산세 1천만원뿐이다.(2026년 법인세 신고 시 신청)

○ 자산상실비율 : **60%** ≧ 20%

(상실된 자산가액) ÷ (상실 전 자산총액) = 21억원 ÷ 35억원* = 60%

* 자산총액에서 토지는 제외됩니다.

○ 재해손실세액공제 : **3.3억원** 〔=Min(①+②+③, 21억원)〕

① 제23기 체납된 법인세 : 3억원 × 60% = **1.8억원**

② 제24기 법인세 : 2억원 × 60% = **1.2억원**

③ 제25기 법인세(2026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신청)

: (산출세액 + 가산세* - 공제·감면세액) × 재해상실비율

= (1억원 + 0원 - 0.5억원) × 60% = **0.3억원**

* 가산세는 ①장부의 기록·보관불성실, ②무신고·과소신고·납부지연·원천징수등 납부지연 가산세에 한합니다.

참고 3 | **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 서식**

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65호서식] <개정 2014.3.14>

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
신청인	① 본 점 소 재 지	
	② 법 인 명	
	③ 사업자등록번호	
	④ 대 표 자 성 명	

신 청 내 용

⑤ 사 업 연 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월)
⑥ 감 면 세 액	법인세
⑦ 자 산 상 실 의 원인발생연월일	
⑧ 상실 전의 자산가액	
⑨ 상실된 자산가액	
⑩ 상 실 비 율	%(100× ⑨/⑧)
⑪ 감면신청이유	

「법인세법」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(신청)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